

# 건축설계경기(현상설계) 운영지침

(건설부고시 제1993-578호, 1994. 1. 4)

## ◇ 주요내용

- 설계방식은 참가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일반공개경기, 제한공개 경기, 지명초청경기로 구분한다.
- 시행기관은 참가자격, 추진일정, 설계조건, 입상내용 등 세부프로그램을 일간지에 공고한다.
- 참가설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도서를 최소한으로 억제

하고 설계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 부여한다.

-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경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, 그 반수 이상은 건축사 등 건축 설계전문가를 위촉, 설계내용 위주로 평가되도록 한다.
- 심사위원의 명단,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한다.
- 공모안은 일정기간 전시한 후 응모자에게 반환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하는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경기질서를 확립하고 건축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건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지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(이하 "정부투자기관"이라 한다)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(이하 "지방공사"라 한다)가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설계안을 설계경기방식으로 공모·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"설계경기"라 함은 특정사업 또는 구상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각기 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·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.
- "일반공개경기"라 함은 응모대상설계자를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경기방식을 말한다.
- "제한공개경기"라 함은 응모대상설계자를 주최자가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설계경기방식을 말한다.
- "지명초청경기"라 함은 주최자가 설계자를 지명하여 응모하도록 하는 설계경기방식을 말한다.
- "주최자"라 함은 설계경기를 시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

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.

- "응모자"라 함은 설계경기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.
- "공모안"이라 함은 응모자가 주최자에게 제출하는 설계안을 말한다.

**제4조(설계경기의 종류)** ①설계경기는 응모 대상 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경기, 제한공개경기 및 지명초청경기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 다만, 주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경기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주최자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당해 설계경기의 2이상의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.

**제5조(설계경기의 시행공고)** ①주최자는 특정사업 또는 구상에 대한 설계경기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- 사업명
- 설계경기의 목적 및 방식
- 응모자격
- 설계경기의 단계·등록절차 및 일정
-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
- 질의응답의 기간·절차 및 그 공개방법
-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
-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
-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·보상의 내용
-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
- 기타 주최자가 설계경기의 시행에 필

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 시행공고는 경기시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

- 일반공개경기 및 제한공개경기 : 일간지공고
- 지명초청경기 : 초청대상자에게 서면통보

**제6조(설계경기의일정)** ①주최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경기를 시행하는 일정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일시, 등록기간, 질의응답기간, 공모제출기간,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중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 제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이상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규모·성격등에 따라 결정한다. 다만, 사업의 추진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7조(등록)** ①응모대상 설계자는 주최자가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경기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업지침서 및 설계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, 동 지침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.

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과 친·인척관계, 동업

관계 등 주최자가 정하는 특정관계에 있는 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제11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8조(과업지침서)** 주최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, 응모자가 자의적으로 설계조건으로 설정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9조(질의응답)**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당해 과업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.

②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제출도서 등)** ①제출도서의 종류는 심사위원이 당해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,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②응모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공모안은 주최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설계경기 심사위원회)** ①주최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경기 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심사위원회는 주최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반수 이상을 건축사 등 건축설계 경험이 풍부한 건축전문가로 하여야 한다.

③심사위원회의 명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최자가 과당경쟁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회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발표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.

④설계경기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회는 모두 동일인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사위원회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⑦주최자는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⑧주최자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의 방법·표결방법 및 심사위원장의 선정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심사)** ①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건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
②심사의 과정 및 결과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③공모안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주최자 및 그 대리인 또는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**제13조(입상작)** ①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.

②입상작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.

③주최자는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.

⑤주최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14조(저작권)**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5조(공모안의 전시)** 주최자는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공모안의 반환)** 주최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응모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다른 기준과의 관계)** 주최자는 이 지침의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한국설계경기운용위원회가 정한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및 국제건축가연맹(UIA)이 정한 설계경기규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**제18조(세부기준)** 주최자는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'건축과 석조기술'에 관한 제 1차 국제회의

'94.4.25~28일까지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'건축과 석조 기술'에 관한 국제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. 금번 행사에서는 세계 각지로부터 유명한 건축사, 기술사, 시공업자 및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하게 되며, 다채로운 행사내용과 신중한 연사 선정 그

리고 산업관광청을 대신하여 이 행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주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확신합니다.

- 주 제 : ① 2천년대의 인조석 사용
- ② 석조사용기술
- ③ 석조와 환경
- ④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인조석
- ⑤ 장식용 석조

○기 간 : 1994. 4. 25~28

○장 소 : 브라질 살바도르 바히아 컨벤션 센터

- 등록비 : 일반-US\$ 200 학생-US\$ 120
- 기 태 :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주소로 문의 바랍니다.

Av. Sete de Setembro, 2195  
40080-002-Salvador/Bahia/Brazil  
Phones : 0055-71-4447/5198  
Telefax : 0055-71-336-6689